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9. 14(목) 10:00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화환경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85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」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4조제2호, 제20조, 제25조제1항)
- 나. 환경계획으로 명칭 변경(안 제10조, 제13조제2항)
- 다. 환경계획 수립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(안 제10조제1항)
- 라.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(안 제10조 제2항 신설)
- 마. 환경계획 수립시 취약계층에 대한 사안 고려하도록 규정(안 제10조제3항 신설)
- 바. 환경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탄소중립 시책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(안 제25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9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「환경정책기본법」 등 상위 법령의 정책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계획 및 제반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나. 주요 내용

- 1)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4조제2호, 제20조, 제25조제1항)
 - 안 제20조 : 「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」의 명칭 변경으로 「환경분쟁 조정법」으로 변경함
 - 안 제25조제1항 : 환경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8조제2항을 인용함
- 2) 환경계획으로 명칭 변경(안 제10조, 제13조제2항)
- 3) 환경계획 수립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(안 제10조제1항)
 -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의 종합계획 규정을 인용하여 기간을 변경함
- 4)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(안 제10조제2항 신설)
- 5) 환경계획 수립시 취약계층에 대한 사안을 고려하도록 규정(안 제10조제3항 신설)
- 6) 환경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탄소중립 시책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(안 제25조제1항)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정책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일부 개정 조항에 있어 상위 법령의 개정이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적기에 반영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조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향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
관계법령

환경정책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. 27., 2019. 1. 15.>

1. “환경”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.
2. “자연환경”이란 지하·지표(해양을 포함한다)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(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3. “생활환경”이란 대기, 물, 토양, 폐기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(日照), 인공조명,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.
4. “환경오염”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해양오염, 방사능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, 일조 방해,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
5. “환경훼손”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(濫獲) 및 그 서식지의 파괴, 생태계질서의 교란, 자연경관의 훼손, 표토(表土)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.
6. “환경보전”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·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.
7. “환경용량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,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.
8. “환경기준”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.

제14조(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(이하 “국가환경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.>

제19조(시·군·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·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·군·구의 환경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 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. 5.>

② 삭제 <2021. 1. 5.>

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21. 1. 5.>

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·군의 환경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, 대기,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1. 5.>

⑥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1. 1. 5.> [제목개정 2021. 1. 5.]

제58조(환경정책위원회)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2항에 따른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

제22조(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③ 지방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, 청년, 여성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(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3조제2항,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·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.